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94. 12. 23.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1. 2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4. 11. 24.
- 다. 상정일자 : 제26회 정기회 제9차위원회('94.12.23)상정, 심사토록,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유승권)

가. 제안이유

1995년도부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마포구가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함(안 제4조)

-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출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의 제정은 1995. 1. 1부터 쓰레기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의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처리하여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거에 따른 판매대금은 재활용관련사업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 지난 4월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처의 분석결과, 쓰레기배출량은 40%감소하였고, 재활용수거량은 90%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우리구에서도 향후에 재활용품수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2원화된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맞도록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총질표 위원) :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의 범위는?

- 답변(시민국장 윤병여) : 주민단체는 각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새마을단체 등이며, 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이다.
- 질의(홍길표 위원) : 주민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주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 답변(시민국장 윤병여) : 재활용품 수집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질의(이종일 위원) : 기금의 용도에서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면 안되는가?
- 답변(시민국장 윤병여) : 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4. 12. 23.
이종일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 수집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에서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함(안 제7조제2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3. 12. 23.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 수집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에서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함.(안 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단서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 6 조 “생략” 제 7 조(기금의 사용) ①“생략”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u>30퍼센트</u> 이내로 한다.	제 6 조 “원안과 같음” 제 7 조(기금의 사용) ①“원안과 같음”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u>40퍼센트</u> 이내로 한다.
제 7 조 “생략”	제 7 조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나.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마포구가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출함(안 제7조)
의 안 번호	제출일자 : 1994. 11. 24.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1995년도부터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체적으로 사용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운용에 관한사항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3. 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제133조 나. 지방자치법(1991. 12. 31. 법률 제4466호) 제110조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 제156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지역(이하 “관할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설치)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 3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관할지역안에서 마포구가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 4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경비, 물품구입 및 기타소요비용

2.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은행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 6 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계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 8 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 9 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 대장

(단위: 원)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단위: 원)

년 월 일	적 요	수 입 (단위: 원)	지 출 (단위: 원)	결 재			
				담 당	계 장	과 장	국 장